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5년 7월 15일

제05-24호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Tel; 3460-1136)

주요 내용

- ▣ 국회가 2005년 6월 23일 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음.
 - 농업인 단체들은 쌀 협상 타결시한 연장 및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비준을 저지하고 있음.
- ▣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쌀 협상 이행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며,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상대국과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 ▣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비준 거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못하고 관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쌀 관세화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충격이 예상됨.
- ▣ DDA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먼저 국회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이후 DDA협상이 구체화되었을 때 실익분석을 통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

- 지난 1년여 동안 진행해온 쌀 협상 결과, 한국은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004년 12월 30일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고,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의 검증 기간을 거쳐 확정되었음.
- 정부는 쌀 협상이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 내용의 변화(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 수정)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향후 10년간 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2005년 하반기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면 국내 쌀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비준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특히 중국 등 국가별로 별도의 후속합의를 체결한 내용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 이면합의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친 후 농업인 단체 및 농민의 쌀 협상 무효와 국회비준 저지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여, 결국 6월 2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음.

2. 국회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가. 쌀 협상 타결시한 연장 및 재협상

■ 농업인 단체 입장

- 농업인 단체들은 2004년 말까지 타결하기로 했던 DDA협상의 타결시한이 2005년 말로 연장된 만큼 우리나라의 쌀 협상 타결시한도 2005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즉 7월 세부원칙 마련 등 DDA협상의 추이를 보며 쌀 협상을 받아들일지 관세화로 나갈지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임.

- 쌀이 관세화되었을 경우의 관세율과 저율관세수입량 등이 결정되는 제6차 WTO 각료 회의의 협상 추세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품목은 현행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만큼 DDA협상 이후로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부 입장

- 정부는 DDA협상 시한 연장에 따라 쌀 협상시한도 연장된다는 주장에 대해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B 제8항에는 쌀 협상시한이 2004년 말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DDA 협상시한과 쌀 협상시한은 별도임을 밝히고 있음. 또한 DDA협상 타결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WTO 협정문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나 기본골격 합의문은 새로운 규범 설정을 위한 지침일 뿐이며 법규가 아님. 기본골격 합의문 제2항은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동결정문이 WTO 협정문 해석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국제관행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협상상대국이 재협상에 동의하더라도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를 빌미로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나. 비준 거부로 인한 관세화 전환 여부

■ 농업인 단체 입장

- 농업인 단체들은 아직 DDA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UR협정문에 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처리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더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정부 입장

- 정부는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쌀 협상이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힘. UR협정문은 2004년 말까지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 쌀 협상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WTO에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 협상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

■ 농업인 단체 입장

- 농업인 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상대국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WTO의 최종 판정결과가 나오는 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DDA협상이 타결되면 그 시점에서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임.

■ 정부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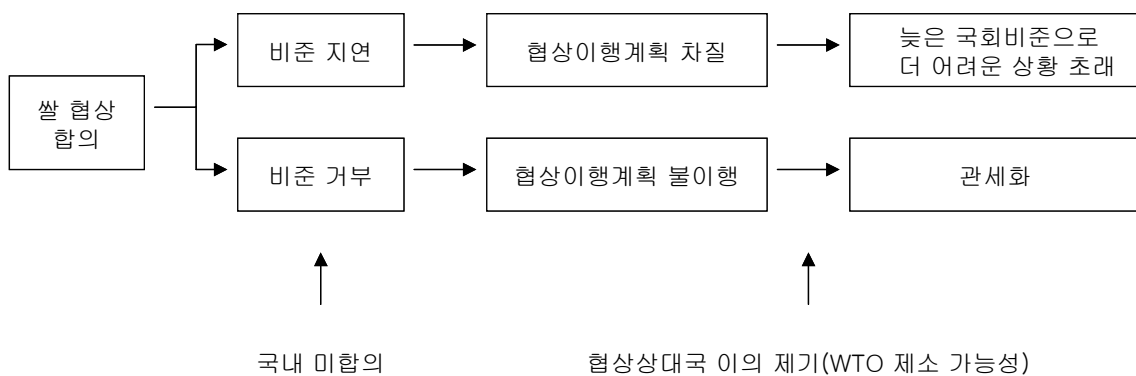
- 정부는 국회비준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협상상대국들의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분쟁절차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힘.

3.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 쌀 협상 상대국들과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 쌀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국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쌀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비준 지연 및 거부 등의 국내 사정으로 이행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국내 미합의가 가져올 파장을 전망해보면, 먼저 국회비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협상 이행계획은 차질을 빚게 됨. 늦은 국회비준으로 정부가 쌀 협상결과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해볼 때,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회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금년내에 의무수입물량 구매를 마치는 데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음.
-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쯤에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9~10월로 예정된 수입쌀 시판준비가 늦어져 금년에 처리해야 할 수입쌀 물량을 내년에 함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2005년 수입량의 10%인 소비자 시판물량이 2006년도 소비자 시판물량(2006년 수입량의 약 14%)에 더해져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년에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만큼 추가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렇게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수입쌀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쌀 협상 이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이어져 협상상대국들과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상대국들이 이익을 제기할 수 있음.

그림 1. 쌀 협상 국회비준 지연 및 거부시 전망



- 또한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비준 거부는 쌀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못하고 관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쌀 관세화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충격이 예상됨.

- 관세화 유예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협상이 결렬된다면 예외조치는 끝나고 관세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농업인 단체들은 DDA협상 이후로 비준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7월 말 세부원칙 초안과 12월 WTO 각료회의에서의 세부원칙 합의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 받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은 현행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그러나 세부원칙 합의 가능성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임. 지난 7월 초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7월 세부원칙 마련뿐 아니라 12월 세부원칙 합의에 대한 일정도 불확실한 상태임.
- 따라서 DDA 농업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농업인 단체의 주장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임. 협상상대국들이 DDA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임.
- DDA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경우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가장 현명한 선택기준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임.
- 따라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먼저 국회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이후 DDA협상이 구체화되었을 때 실익분석을 통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